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역보건법」 제11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사항의 규정을 통하여, 아동·청소년기의 가장 빈발하는 질환인 구강질환에 대해 지역 치과의원을 등록하여 예방중심의 계속관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치과주치의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나.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액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다.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라.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 1.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 2. (생략)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구강건강사업)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 3.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4.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생략)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등 금지)

①, ② (생략)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 2. (생략)

④ (생략)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③ (생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9 (생략)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생략)

나. 예산조치 : 시비100%지원

다. 합 의 : 별도 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6. 4. 14 ~ 5. 4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중요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행정영향평가

●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

- 주요개정 내용은 학생치과주치의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에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국한된 내용을 학생에게도 확대하려는 내용임
- 2015년 저소득층 아동 626명을 대상으로 1차 검진하였으며, 의료비 지원은 207명으로 지원액은 19,600,000원이었음
-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의 주요 내용은 사업참여를 신청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구강검진 비용을 1인당 4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치아우식증이 가장 빈발하는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구강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구 행정에 미치는 영향

- 현재 학교보건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학생 구강검진의 미흡한 사후관리 보완 대책으로 성장기 아동에게 구강검진, 보건교육, 예방진료 등 필수적인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구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아동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저소득층 아동”를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
2. 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제4조, 제5조, 제7조 중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을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공자 및 진료범위)

1. 학생치과주치의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치료 등 구강건강관리이다.
2.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지역 협의체를 통하여 정한다.

제7조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 학생 및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제14조 중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주치의 지원을 제공하였거나”을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
| 1.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1. <u>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u> |
| 2. 지원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 2. <u>지원대상 학생 및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u> |
| 제14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u>저소득층 아동</u> 에게 치과주치의 지원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4조(환수조치) ----- ----- <u>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u> ----- ----- <u>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u> ----- -----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안 제5조,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1억원을 넘지 않음

4. **작성자**

동작구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820-9455)